

논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32호	제 출 자	논산시장
제 출 일	2022. 3. 16.	회부연월일	2022. 3. 16.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이 「성별영향평가법」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 「성별영향평가법」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
- 나. 조문내 용어 정비 :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
- 다. 특정성별영향평가 조항 신설(안 제4조)
- 라.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·운영 등(안 제5조~제13조)
- 리.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 근거 신설(안 제14조)

3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「성별영향평가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
- 지방자치법 제28조,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, 제13조의2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33호	제 출 자	논산시장
제 출 일	2022. 3. 16.	회부연월일	2022. 3. 16.

1. 제안이유

- 국가를 위해 희생·헌신하신 참전유공자(6.25전쟁 및 월남전쟁)의 공훈에 보답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을 인상하여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“복지수당” 을 “배우자 복지수당” 으로 변경(안 제2조제4호)
- 나. 참전명예수당을 “월 15만원” 에서 “월 20만원” 으로 변경(안 제4조제1호)
- 다. “복지수당 월 5만원” 을 “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” 으로 변경(안 제4조제3호)

3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·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을 인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
- 지방자치법 제28조,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